KCS 47 10 05 : 2019

# 노반공사 일반사항

2019년 4월 8일 개정 http://www.kcsc.re.kr







#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

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,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# 건설기준 연혁

-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(설계기준, 표준시방서) 간 중복·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.
-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 ·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.

건설기준	주요내용	제정 또는 개정 (년.월)
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(노반편)	•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로 분리된 노반분야의 전문 시방서를 통합하고, 기준체계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시방서(노반편)로 제정 • 노반·궤도·전기분야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시방 서와 기술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 준을 마련	제정 (2011.12.)
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(노반편)	• 표층안전처리공에서 현행 인장강도 및 봉합강도 시험방법이 KS에 규정된 품질기준과 상이하여 올바르게 수정 • 설계기법 개선·최적화 및 신기술·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과 그 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• "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"등 상위기준 개정내 용 반영	개정 (2013.11.)
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(노반편)	• 최근 철도교량에 사용빈도 많아진 구체방수 기준을 신설하여 공사시방서 작성의 표준화 유도 • KS규격 개정내용 반영 및 안전사고 예방(싱크홀, 운행선 근접공사, 전기뇌관 취급, 시스템 동바리 등) 을 위한 안전기준 제시 • 관계법령 및 기관명 수정	개정 (2015.12.)
KCS 47 10 05 : 2016	•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	제 정 (2016.6.)
KCS 47 10 05 : 2019	•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	개정 (2019.04)

제 정: 2016년 6월 30일 개 정: 2019년 04월 08일

심 의 :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: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

소관부서 :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

관련단체 : 한국철도시설공단 작성기관 : 한국철도기술연구원

# 목 차

1.	일반사항	1
	1.1 적용범위	1
	1.2 참고 기준	1
	1.3 용어의 정의	2
	1.4 기호의 정의	4
	1.5 법령 준수	4
	1.6 공사관리	4
2.	자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5
3.	시공	5

노반공사 일반사항 KCS 47 10 05: 2019

#### 1. 일반사항

#### 1.1 적용 범위

- (1)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철도건설, 개량, 보수 등 철도노반공사(이하 공사라 한다.)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한다. 공사의 시공기준으로 설계시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해야 하며, 공사시방서 작성 시 이 항목은 '이 기준은 ○○○○○○(이하 ○○○이라 한다.)이 발주한 ○○○공사에 적용한다.'라고 기술해야 한다.
- (2) 이 기준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KDS 47 10 00, 국토교통부에서 제정 한 표준시방서(이하 일반시방서라 한다.), KCS 14 20 00, KCS 27 00 00 등을 기준으로 공사시방서를 작성해야 한다.
- (3) 공사시방서는 내역서상의 공사단위 공사종류에 대하여 작성하고, 시방내용은 이 기준 과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(노반편)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해당분야 일반시방서에 규정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해야하며, 여러기준이 복수로 선택될 경우는 기준마다의 용도를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. 이 기준 내용상 도면에 기준을 표기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은 도면에 표기하고 동시에 시방서절과 구절을 표기하여 도면과 시방서를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해야 한다.
- (4)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KCS 10 10 05를 따른다.
- (5) 적용순서
  - ① 시방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.
    - 가.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
    - 나. 공사시방서
    - 다. 설계도면
    - 라. 물량내역서
  - ②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.
- (6) 적용상의 주의
  - ① 이 기준의 적용은 자구(字句)에 구애됨이 없이 기준에서 의도하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해야 한다.
  - ② 당해 공사의 현장제반여건, 시공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 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수급인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.

#### 1.2 참고 기준

내용 없음

KCS 47 10 05 : 2019 노반공사 일반사항

#### 1.3 용어의 정의

(1)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감시시공 : 신설하는 구조물 또는 토공공사 등의 시행으로 기존 철도에 변위나 변형 등의 영향을 줄 범위 밖이나, 운행선에 근접한 관계로 운행선 철도를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면서 시행해야 하는 공사
- 계측: 구조물이나 지반에 나타나는 현상을 측정하는 작업으로서 온도, 응력, 변형, 압력, 침하, 이동, 기울기, 진동, 지하수위, 간극수압 등의 측정을 포함한다.
- 구교(Culvert): 일반적으로 경간이 1 m 이상이고 전장이 5 m 미만을 말한다.
- 근접공사: 철도안전법,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, 철도건설규칙 및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규정, 기타관계법령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공사
- 기성말뚝: 공장에서 제작된 말뚝으로서 RC말뚝(KS F 4301), PC말뚝(KS F 4303), PHC 말뚝(KS F 4306), 강관말뚝(KS F 4602) 및 H형강말뚝(KS F 4603) 등이 사용되고 있다.
- 기지: 화물취급 또는 차량의 정비 및 유치를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.
- 기초: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여 구조물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갖는 하부구 조물을 말한다.
- 기초지반: 구조물이 축조되고 그 안정성과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땅을 말하며 흙과 암반으로 구성된다.
- 노반: 궤도를 지지하기 위하여 선로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을 따라 토공사, 교량, 터널 등 구축물을 구축하거나 원지반 그대로 궤도를 지지하는 토대를 총칭하여 노반이라 한다.
- 대책시공: 신설하는 구조물 또는 토공공사 등의 시행으로 기존 철도에 변위나 변형 등 의 영향을 주는 범위안의 시행공사
- 맹암거(Mole Drainage): 흙속에 일정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놓아 배수 시키는 형태로 장 시간에 걸친 배수를 원할 때는 그 속에 유공관을 매설하기도 한다.
- 부등침하: 지반이나 기초의 지점 간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침하현상을 말한다.
- 부본선: 주본선 다음으로 중요한 선로로서 평상시에는 차량의 유치를 제한하며, 정차 열차의 취급과 열차의 착발, 교행, 대피, 통과열차의 취급을 주기능으로 하는 선 로
- 상부노반: 시공기면에서 일반철도 1.5 m, 고속철도 3.0 m 깊이 범위 내에 있는 지반을 말한다.
- 상부노반 쌓기: 쌓기 중 시공기면에서 일반철도 1.5 m, 고속철도 3.0 m 깊이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을 쌓는 작업을 말한다.
- 선로지장작업: 철도건설·유지보수사업 관련 열차 또는 차량 운행을 지장하거나 지장 할 우려가 있는 차단·열차사이·상례작업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.
- 승강장: 여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, 전동차용, 일반여객 열

차용으로 나눈다.

- 얕은기초: 얕은 깊이의 흙이나 암반에 직접 하중을 전달하여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초이다.
- 여객통로: 역사와 승강장 또는 승강장 상호간에 여객이 통행하기 위한 통로를 말하며 평면통로와 지하도, 구름다리(과선교)와 같은 입체통로가 있다.
- 역: 열차를 착발하고 여객,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보통역, 여객 역, 화물역으로 구분한다.
- 역사: 여객 및 화물 수송업무를 수행,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.
- 운행선: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철도공사,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영업(운전) 하고 있는 철도를 말한다.
- 유효장: 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유치할 수 있는 당해 선로의 최대길이
- 적하장: 화물을 화차에 적재 및 하화함과 동시에 트럭과 같은 타 수송차량에 화물을 옮겨 싣고 내리는 장소
- 접지압: 기초저면과 지반 사이에 작용하는 압력을 말한다.
- 정거장: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로서, 조차장, 신호장, 객차기지, 화물기지, 고속철도 차량기지, 전동차기지, 기관차기지를 포함한다.
- 지축: 정거장내에 제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부지를 말한다.
- 차단작업: 철도차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운전명령 발령에 의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.
- 철도기준점: 철도의 설계, 시공, 유지관리 등에 위치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준점을 말한다.
- 철도운행 안전관리자
  -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운전사항 업무협의를 담당 하는 자를 말한다.
  - 철도안전법 제69조 및 동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말한다.
- 측선: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 이외의 선로로서 유치선, 조성선, 인상선, 적하선, 예비차선, 검사선, 분별선, 기회선 등 본선 외의 선로
- 파쇄대: 단층을 따라 암반이 부스러져 조성된 길쭉한 띠 모양의 연약대를 의미한다.
- 평판재하시험: 기초저면 위치까지 굴착한 다음 지반위에 재하판을 놓아 하중을 가하고, 그 때의 침하량을 측정하여 지반의 지내력을 알아내는 시험을 말한다.
- (2) 이 기준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.
  - ① 계약문서(이 기준을 포함한다.)

- ② 건설기술진흥법,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
- ③ 기타 건설 관계법령
- ④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
- ⑤ 국어사전

#### 1.4 기호의 정의

내용 없음

#### 1.5 법령 우선 준수

(1) 수급인은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계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(건설공사 중 관계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.) 에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의 규정을 우선 준수해야 한다. 참고 법령은 표 1.5-1과 같다.

#### 표 1.5-1 참고 법령

- 건설기술 진흥법
- 건설산업기본법
- 건축법
- 고압가스안전법
-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근로기준법
- 농지법
- 도로교통법
- 도로법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-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
- 도시철도법
-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 지침
- 문화재보호법
- 물환경보전법
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
- 산림기본법

- 소방기본법
- 산업안전보건법
- 산업표준화법
- 소음 진동관리법
-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
- 에너지 이용합리화법
- 전기공사업법
-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
- 정보통신공사업법
- 철도산업발전기본법
- 철도사업법
-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
- 철도안전법
- 총포 · 도검 ·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- 하천법
- 환경영향평가법
- 한국철도시설공단법
- 한국철도공사법

#### 1.6 공사관리

(1)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KCS 10 10 00, KCS 10 20 00, KCS 10 30 00을 따른다.

#### 1.6.1 공사착수 단계

- (1) 현장요원의 배치
  - ① 철도 운행선이나 운행선 인접구간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열차운전 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노반공사 일반사항 KCS 47 10 05: 2019

- (2)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검토
  - ① 기존철도 운전보안을 위한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.
- (3) 시공측량, 기준점 설치
  - ① 확인측량은 KCS 47 10 20 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좌표점, 선로중심, 곡선 및 완화곡선 시·종점, 교량, 교대, 교각 등의 건조물위치, 정차장위치, 수준기점(BM) 등을 확인하고 인조점, 기준점, 보조수준기점, 기준틀, 표지 등을 측량, 설정한 후 확인측량성과품(야장, 측량도면, 계산서, 도표 등)을 작성해야 한다.

#### 1.6.1 공사시공단계

- (1) 임시시설물 공사
  - ① 수급인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기존철도를 횡단하는 건널목설치, 시설물설치, 선로가 받침공사, 선로지하매설물 및 굴착공사 등 선로차단공사가 필요할 경우는 KCS 47 10 80을 따라 설치, 시공해야 하며 시공 중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.
- (2) 개선공법 적용시공
  - ① 승인 신청한 개선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, 공법, 기자 재 등을 포함해 당초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서 영업선 근접공사의 경우 열차운전 보안면에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 요건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3) 구조물과 지장물의 철거
  - ① 철도건설공사용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, 시설물 기타 건조물 등 지장물은 반드시 공사에 지장 없도록 이설해야 한다.
- (4) 중장비, 기계기구류
  - ① 철도공사 시공 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및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류는 그 종류, 수량, 성능, 장비사용안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/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, 시공해야한다.
- (5) 공사수량계산, 도면작성
  - ① 공사수량계산은 국토교통부 수량산출기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량 및 단가산출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.
  - ②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공단 철도분야 전자도면작성표준과 KS F 1001에 따라 작성한다.

#### 2. 자재

내용 없음

#### 3. 시공

내용 없음

KCS 47 10 05 : 2018 노반공사 일반사항

### 집필위원

성 명	소 속	성 명	소 속
황선근	한국철도기술연구원	신지훈	한국철도기술연구원

## 자문위원

성 명	소 속	성 명	소 속
구웅회	㈜서영엔지니어링	안태봉	우송대학교
정혁상	동양대학교	조성호	중앙대학교

#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

성 명	소 속	성 명	소 속
이용수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정혁상	동양대학교
구재동	한국건설기술연구원	구자안	한국철도공사
김기현	한국건설기술연구원	김석수	㈜수성엔지니어링
김태송	한국건설기술연구원	김재복	㈜태조엔지니어링
김희석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소민섭	회명정보통신㈜
류상훈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여인호	한국철도기술연구원
원훈일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이성혁	한국철도기술연구원
주영경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이승찬	㈜평화엔지니어링
최봉혁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이진욱	한국철도기술연구원
허원호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이찬우	한국철도기술연구원
		최상철	㈜한국건설관리공사
		최찬용	한국철도기술연구원

##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

성 명	소 속	성 명	소 속
김현기	한국철도기술연구원	최상현	한국교통대학교
이광명	성균관대학교	정광섭	포스코건설
신수봉	인하대학교	손성연	씨앤씨종합건설(주)
이용재	삼부토건(주)		

노반공사 일반사항 KCS 47 10 05 : 2019

궆	투	ᆔ	톳	부

성 명	소 속	성 명	소 속
임종일	철도건설과	홍석표	철도건설과
문재웅	철도건설과		



KCS 47 10 05 : 2019

# 노반공사 일반사항

2019년 04월 08일 개정

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

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

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

Tel: 1588-7270 http://www.kr.or.kr

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

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

Tel: 02-460-5000 http://www.krri.re.kr

국가건설기준센터

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(대화동)

Tel: 031-910-0444 E-mail: kcsc@kict.re.kr

http://www.kcsc.re.kr